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민의원)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하여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대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무기한으로 승계될 여지가 있으므로, 승계 기간을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가. 창업기획자 운용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대상 확대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설립 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창업기업을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50%) 인정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u>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u>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u>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u> ----- -----.
1. <신설>	1. <u>초기창업기업</u>
2. <신설>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¹⁾에 투자해야 하는데,²⁾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창업 3년 이상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도 50% 투자의무비율로 산입하게 됨.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창업기업의 4년 생존율은 40.9%, 5년 생존율은 34.7%로서, 상당수 기업이 창업초기인 3년을 지나 도약기 초반인 4~5년차에 초기자본금 소진 등으로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64.9	53.6	46.9	40.9	34.7	31.0	27.8

자료: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4~5년차까지 투자 받은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에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 본연의 업무가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이기에³⁾ 현행법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개인투자조합에 투자대상을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투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2024년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을 보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비 17.0% 감소(2조 6,808억원→2조 2,243억원)하였고 투자 비중도 6.0%p 감소(24.6%→18.6%)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감소추세가 투자 의무 완화에 따라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초기(3년 이하)	금액	21,729	30,585	33,594	26,808	22,243	△17.0%
	비중	26.8%	19.2%	26.9%	24.6%	18.6%	△6.0%
중기(3~7년)	금액	27,169	58,083	42,828	30,709	33,551	+9.3%
	비중	33.6%	36.4%	34.3%	28.1%	28.1%	-
후기(7년 초과)	금액	32,064	70,703	48,284	51,616	63,663	+23.3%
	비중	39.6%	44.4%	38.7%	47.3%	53.3%	+6.0%
합계		80,962	159,371	124,706	109,133	119,457	+9.5%

자료: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2.13.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창업기업도 투자 의무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나.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인정대상 확대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인정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2. <u>중소기업에 대한 투자</u>

3. ~ 8. (생략)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 ⑤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려면 창업·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벤처투자회사⁴⁾ 및 벤처투자조합⁵⁾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총자산(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총출자액)의 40% 이상을 위 투자대상(창업·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대한 정의로서 창업·벤처기업과 함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⁶⁾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 범위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현행 정의규정과 투자의무규정의 불일치는 해소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일정요건(기술수준평가 B 등급 이상,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이상, 경영혁신시스템평가 700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⁷⁾ 현행제도에서 벤처투자회사가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데 일정부분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을 통해 투자대상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벤처 캐피탈이 초기창업기업부터 창업단계를 벗어난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중간단계 중소기업에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1조(메인비즈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대한 원활한 성장자금공급(브릿지 파이낸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의 본질인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현재도 40%의 의무투자비를 충족시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⁸⁾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업력 기업의 성장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으로 전체 중소기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폐지

개정안은 현행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부여하던 투자 의무(출자금액의 20%)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8) 현재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총자산(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총출자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잔여 60%에 대한 투자 대상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각주 4, 5 참조)

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⁹⁾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

1. <삭 제>

2. <삭 제>

- ② -----

제1항에 -----

----- 제1항에 ----

-----.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 의무를 부여하면서,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 중인 모든 벤처펀드 출자금액 합의 40% 이상과 각 개별펀드의 2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¹⁰⁾.

개정안에 따라 각 조합별로 투자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해소되므로 펀드운용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전체 투자 의무비율(40%)을 지키는 한도에서 투자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특수목적추구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등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앞서 안 제13조제2항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인정대상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설립 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 것과 달리,

-
- 9) (제37조제1항제1호) 창업기업 투자
(같은 항 제2호) 이노비즈·메인비즈 투자
(같은 항 제3호) 벤처기업 투자
(같은 항 제6호) 프로젝트 투자
(같은 항 제7호) 제1호~제6호에 준하는 투자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안 제51조제2항에서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존치시킨 것은 업력 3년 미만의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보육과 투자기능을 수행하는 창업기획자(AC, 엑셀러레이터)에게 현행제도가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투자의무를 벤처투자펀드 영역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환경,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개별 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의무(20%)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 연장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50%),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상 40%),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60%)이 등록 후 일정비율 이상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 5년 ----- ----- ----- -----

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u>3년</u>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u>3년</u>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① ----- <u>5년</u>----- ----- ----- ----- ----- ----- ----- ----- ----- <u>5년</u>----- ----- -----.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u>3년</u>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 ----- <u>5년</u>----- ----- ----- ----- ----- ----- ----- ----- -----.

③ (생 략)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 략)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 5년-----

-----.

② ----- 5년-----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사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

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

1. <삭 제>

2. <삭 제>

② -----

제1항에 -----

-----.

----- 제1항에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5년-----

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 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투자주체별(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 의무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하에서는 벤처투자회사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투자주체별 투자 의무

구분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
투자비율	5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60% 이상
투자재원	출자금액	투자금액	총자산*	출자금액	출자금액
이행기간	등록 후 3년				
행정처분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경고조치				

*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자산(자본금과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계)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투자비율은 3년 이후에도 유지하여야 함¹¹⁾.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¹²⁾.

현행 제도는 벤처투자회사에 일정 기간 내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의 발굴 및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투자금 소진 이후에야 유망 기술을 보유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어렵게 하여 벤처투자의 질적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 의무 이행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전략적인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행기간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로 판단됨.

같은 취지로 지난해 정부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관계부처합동, 2024.10.)을 발표하여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 이내 투자 의무 등 현행 벤처캐피탈 규제가 글로벌 표준 대비 투자 자율성을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 의무 준수 기간과 연도별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¹³⁾.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무리한 단기간 투자 압박을 완화하여 벤처투자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대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짧은 시간 내 투자자금 소진, 붐앤버스트(Boom&Burst)¹⁴⁾ 등 그간의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투자결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지는 등 자산운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공급이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등에 경영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주체에 등록 후 3년부터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규정은 펀드 결성(VC 등록 후 5~7개월) 및 투자(펀드 결성 후 3~4년)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완화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3)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4.10., p.20.

14) 붐앤버스트(Boom&Burst)란 특정 시장 또는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단기적인 투자규율, 과도한 낙관론, 사회적 유행 등으로 투자시장에 돈이 쉽게 유입되고 수많은 신생기업이 등장하는 붐(Boom)과 과잉투자과 비이성적 기대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붕괴가 나타나는 버스트(Burst)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과열-쇠퇴 경향이 뚜렷한 벤처투자시장에서 특히 문제됨.

마. 벤처투자회사의 연도별 투자 의무 완화

개정안은 기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부여되던 투자 의무를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 1건, 5년이 지나기 전 1건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u>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u>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u>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신설> 나. <신설> 5.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u> ----- ----- ----- ----- ----. ----- ----- ----- -. 가. <u>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u> 나. <u>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u> 5.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법인설립 초기부터 투자 의무를 매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고 유연한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투자시

점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 심사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현행법의 투자 의무는 최소투자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연간 1회 이상 투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투자도 인정¹⁵⁾하는 등 상당히 완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현재 벤처투자회사에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¹⁶⁾ 등 조세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회씩 투자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3년에 1회, 5년에 1회로 완화함으로써 초창기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초기 또는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 모험자본공급이라는 벤처투자회

15) AUM(Assets Under Management, VC 자본금과 운용중인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총계)이 기만 하면 어느 자금으로 투자해도 무방함.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의 기능 유지를 위한 현행의 최소화된 가이드라인에 더하여 추가 완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초기에는 네트워크, 시장 이해 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의무 인정대상 확대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인정대상을 현행 벤처투자조합 외에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 (생략)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인 <u>란 개인투자조합 또는</u> ----- ----- -----. 13.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

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u>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u>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 ----- ----- ----- <u>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u>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벤처모펀드로서 민간자본으로 벤처펀드에 간접·분산 출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4.18.)으로 제도화되었음.

현재 민간벤처모펀드는 2024년 2월 하나금융그룹¹⁷⁾이 1,000억원을 출자하여 결성한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가 유일한 실정인데, 높은 결성 최소규모, 벤처펀드 출자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¹⁸⁾ 등이 후속 모펀드 결성의 부진 원인으로 파악됨.

2025년 8월 민간벤처모펀드 결성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시행령 제35698호, 2025.8.5. 개정)된데 이어¹⁹⁾, 개정안은 민간벤

17) 하나은행 950억원, 하나벤처스(GP, 50억원)

18)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따라 은행권 등 금융기관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실제 출자규모의 4배가 위험자산으로 계산됨.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처모펀드 운용요건인 의무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펀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재간접펀드 조성 활성화 및 벤처투자시장 다층화²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에서 민간벤처모펀드 결성·운용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고 민간벤처모펀드 조성 확대,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사. 벤처투자회사 영업양도 및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제한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영업양도 및 분할·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20) 벤처투자 생태계 내에 다양한 투자 주체와 단계, 자금 출처가 동시에 존재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말함.

	며,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u>
--	---

현재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²¹⁾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의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효과가 무기한 승계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법행위 승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아울러 효과 승계기간 및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선의의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벤처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 해됨.

다만, 행정처분효과 승계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타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²²⁾, 「식품위생법」²³⁾ 등은 “1년”으로 설정하

21)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9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 또는 출자자의 변경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보다 연장된 “2년”으로 설정한 것은 벤처투자 회사에 금융회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23)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